

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

의안 번호	8-70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-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지침 마련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-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
-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)
-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9조)
-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(안 제10조)
-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(안 제11조)
-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위탁 등에 대해 규정함(안 제12조)
-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예산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(안 제13조)
-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(안 제14조)

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붙임3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- 사전예고(결과) : 붙임4
 - 입법예고 : 2021. 7. 23. ~ 2021. 8. 12. (21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조례 : 해당사항 없음
 - 방침결정문 : 붙임5

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.
2. “이용자”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이용시설”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, 교통 안전시설, 거치대,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.
4. “대여사업자”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.
5. “도로”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,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용안전 증진사업)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
2.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
3.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·계도
4.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
5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.

제5조(안전교육 등)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.

1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
2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
3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
4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

제6조(안전지침마련)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할 수 있다.

제7조(주차시설 등) ① 시장은 공원, 관공서, 종합터미널, 전철역, 시내버스 승강장,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고시를 통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이와 같다.

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8조(준수사항)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.

1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

2.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

3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

②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 비치

2.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· 운영

3.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 · 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 장 범위 안내

4.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

5. 불법 주차(방치)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

6.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무단방치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도로,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「도로법」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·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·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(실태조사)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2조(위탁 등)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예산 지원)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교통정책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통정책과장 임 종 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전거교통팀장 오 동 원
	담당자 성명·전화	한 솔 (행정 2495)